



- 2. 금융투자협회 규정
 - 가.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
 - 나.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

2. 금융투자협회 규정*

가.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(2016/11/24개정·2017/1/1시행¹⁾)

1) 목적

- 시험횟수 증가(업계요구)와 시험교재의 실무내용 위주 개편 및 응시생의 시험시간 단축요구 등을 반영하여 일부 시험의 출제문항 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
- 전문투자자 대상 펀드투자권유인력 등의 요건을 완화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재무위험관리사 시험과 3종의 투자권유자문인력시험(펀드, 증권, 파생상품)의 출제문항 수를 각 100문항으로 조정(시험시간은 120분)
 - 투자자산운용사, 금융투자분석사 시험이 100문항으로 운영되고 있으며, 시험 범위 및 합격 기준(정답비율 70% 이상)은 현행 수준을 계속 유지하므로 합격자의 전문성 저하 등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판단
- 국내외 금융투자회사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경우 전문투자자 대상 펀드 투자권유업무 수행을 허용
- 금융투자분석사 등록요건 정비(1-4조 6호)
 - 해외에서 조사분석자료 작성 경력기간과 국내에서 조사분석자료 작성을 보조한 경력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 금융투자분석사 등록 허용

* 해당 내용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1)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함. 다만, 1-4조 6호 나목 및 2-17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1월 25일부터 시행



□ 자격시험 세부교과목간 문항 수 조정 근거 마련(별표 3-1조~3-7조, 4-1조)

- 유사내용 중복 방지, 시험 난이도 조정 등을 위하여 세부 교과목간 출제문항수를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
 - (예시) 펀드투자권유대행인 시험 제3과목(부동산펀드) 20문항 중 세부 교과목인 관련법규 5문항, 영업실무 15문항 → 관련법규 6문항, 영업실무 14문항으로 조정 가능(다만, 제3과목 총 문항수(20문항)는 고정)

나.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일부개정(2016/11/24개정·2017/1/1시행)

1) 목적

- 파생결합증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에 대한 구분관리, 투자대상 자산의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회사의 내부통제 기준에 반영하도록 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□ 파생결합증권 조달자금에 대한 구분 관리(38조의2 신설)

- 파생결합증권(ELS, ELB, DLS, DLB) 발행을 통하여 조달받은 자금을 금감원의 업무보고서 제출양식에 따라 일관된 기준으로 기타 고유재산과 구분 관리
- 정보의 정확성을 위해 헤지자산을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

□ 구분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·운영(38조의3 신설)

- 헤지자산 운용현황을 일별로 산출·점검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구축 의무화
- 전산시스템 접속권한자에 한해 데이터 입력·수정, 접속기록, 작업내용 기록 유지

□ 투자대상자산의 요건(38조의4 신설)

- 투자대상자산의 건전성과 유동성 고려하여 운용
- ① 헤지자산의 최저투자가능등급 설정, ② 부적합 헤지자산목록 및 투자시 한도 설정, ③ 채무증권 투자시 한도 설정 등 기준을 마련함



- ②, ③의 기준변경 시 위험관리책임자 또는 파생상품업무책임자가 포함된 리스크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 마련

연구원 배승욱(02-3771-0867, bsu@kcmi.re.kr)